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분쟁 조정 · 중재 실무 개선 방향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0:00 ~ 13:30

장 소 :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3층 그랜드볼룸)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분쟁 조정 · 중재 실무 개선 방향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0:00 ~ 13:30

장 소 :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3층 그랜드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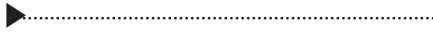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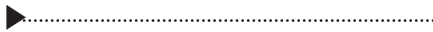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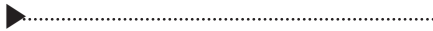
토론회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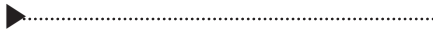
10:00 ~ 10:10 **개회 및 국민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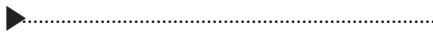
10:10 ~ 10:30 **제1주제발표**
발제자 -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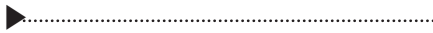
10:30 ~ 10:50 **제2주제발표**
발제자 -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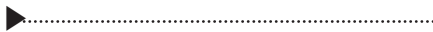
10:50 ~ 11:10 **지정토론**
정 희 성 정책연구팀장 / 이 상 협 네이버 정책실 차장



11:10 ~ 12:20 **종합토론**
사 회 - 정 일 연 경기중재부장, 수원지법부장판사



12:20 ~ 12:30 **총 평**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2:30 ~ 13:30 **오찬 및 간담**

— 목 차 —

제1주제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I.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한계	12
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상의 문제점	13
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시 문제점	13
2. 언론중재 절차상의 문제점	14
3.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	14
I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방안	15
1. ‘언론중재법’의 개정	15
2. 언론중재 절차의 개선	15

제2주제 /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I. 들어가며	19
II. 포털의 알림표시와 관련된 개선방안	20
1. 알림표시의 가치	20
2. 포털의 알림표시 현황	21
III. 포털의 심리출석과 관련된 개선방안	24
1. 포털의 심리출석의무	24
2. 포털의 심리출석과 관련된 현행 실무	25
3. 포털의 출석의무면제 입법화의 가능성 검토	27
4. 보론 : 2010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사건	29
IV.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30
1. 구글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	30
2. 포털만 알림표시를 해야 하는가?	31

지정토론문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중재 실무개선방안	37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중재 실무개선방안	43

주제논문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이하 ‘언론중재법’)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¹⁾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

1) 제2조 (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조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의 경우에도 각각 제16조와 제17조에서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포털 뉴스가 언론보도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킨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포털 보도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점점 더 높아져 보도의 인지가 이전에 비해 용이해짐에 따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 및 언론사와의 계약, 다른 법률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현행 법률 내용 및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한계

주요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각 언론사들과 기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전송받은 기사를 그대로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단순매개만 할 뿐 해당 기사의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와의 계약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법률 조항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조항의 제18호 및 제19호를 같이 놓고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포털들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만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괄되며,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들의 경우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그 역할이 제한되므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언론의 자유 보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2009년 7월 31일에 전부 개정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를' 이하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을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기사제공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간 사회적 합의 및 사적 계약으로 보장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볼 때,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직접 이에 대해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상의 문제점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률적 정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실제 적용 시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시 문제점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혹 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받아 매개만할 뿐 수정·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에 직접 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직접 청구의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언론중재 절차상의 문제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이하 ‘언중위’) 통해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선행결정(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 또는 언중위 직권조정결정)에 종속되어 그 결정에 따라 수정된 기사를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을 받게 된다. 또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제4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언론사에서 수정한 기사를 전송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의 규정으로 인해 내용적으로는 제3자적 입장, 즉 옵저버(Observer)의 역할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 요청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번 언중위의 조정에 출석하여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언론보도의 내용적인 것 이외에 별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응답 출석하여 조정 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규정상 그러한 구분 없이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요청되는 모든 언론보도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

법률 규정상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와 별개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만약 언론사와 별개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내려진 상

황에서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언론 자유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타 법률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방안

1. '언론중재법'의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일방 당사자라기보다는 제3자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대상은 언론사로 한정하고 청구 또는 조정의 결과가 해당 언론사와 계약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당 언론사가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할 경우 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전송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전송된 형태 그대로 뉴스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언론 자유의 보장에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언론중재 절차의 개선

현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참여하는 절차를 개선한다면 실무적인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출석하여 단순히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직권 조정한 내용을 따르겠다는 결정만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분쟁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분쟁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가 표준적인 형태의 직권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 두고, 표준결정문대로 합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결정문 내용 외의 사항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역시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주제논문 2

포털사건 처리방안에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I. 들어가며

포털뉴스에 대해 언론보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 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9. 2. 6. 법률 제9425호)」(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발효되면서부터다. 여기서 ‘언론보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라 함은 포털뉴스에 대해 정정·반론·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고,¹⁾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에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만 부과했을 뿐 언론의 범위를 기존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여 포털이 언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몇 년에 걸쳐 논의하여 도출해낸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결과였다.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 제정과 동시에 뉴미디어라 할 수 있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논의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이라 하여 인터넷 매체 중 일부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인터넷 신문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전체 기사 중 30% 이상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여야 했고, 또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소위 ‘독립형 인터

1) 포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민법에 의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포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새롭게 규정한 것은 해당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 신문'으로 일컬어지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과 같은 매체들뿐이었다. 결국, 인터넷 세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처음부터 법적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털은 언론이다, 아니다 하며 논쟁을 벌였다. 얼핏 양측의 입장 차가 커보였지만 포털이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편집'과 '배포'를 담당한다는 점과 이러한 포털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털이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과 마찬가지로 정정보도 등의 책임을 지고, 간이한 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²⁾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행 언론중재법의 개정 배경, 입법 목적을 살펴보고자 다소 장황하지만 포털 뉴스서비스의 입법화 과정을 돌아봤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상의 포털 관련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토론회가 포털사건 처리방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되, 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낸 사회적 합의 또한 존중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II. 포털의 알림표시와 관련된 개선방안

1. 알림표시의 가치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즉 '알림표시'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³⁾).

-
- 2)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포털은 언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포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태도를 표리부동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다. 정정보도청구 등을 허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3)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알림표시는 기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언론중재법 개정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들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설령 권리 침해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해도 최장 30일까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삭제 내지 임시조치와 비교할 때 언론중재법상의 ‘알림표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미약하고, 언론의 자유 제약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문제되고 있는 기사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도 않으며, 단지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림표시 제도에 대해 위원회 서울제5중재부 조사관을 맡고 있는 김문중 변호사는 한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적절한 조화의 산물’이라 주장한 바 있다.

2. 포털의 알림표시 현황

그러면 포털들은 알림표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포털들이 기사 가치의 훼손을 내세워 알림표시에 다소 소극적이다.

(1) 알림표시의 위치

포털이 알림표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알림표시의 위치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포털은 기사 제목 바로 밑에 알림표시를 달라는 위원회 규칙(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 제3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⁴⁾에도 불구하고 알림표시를 해당 기사의 본문 하단에 달고 있다. 이 본문 하단은 주목도가 현저히 낮은 위치로서 언론중재법에서 알림표시 제도를 도입한 취

4)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이 진행 중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기사 제목 위 또는 제목 아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위치에, 기사 제목 및 본문과 구별되는 글자 모양 또는 색깔로 표시(본문 아래 부분은 독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외)해야 함’

지를 도무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식의 알림표시가 달리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은 허술한 언론중재법 규정에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에 알림표시를 명령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글씨체로, 글씨 크기는 얼마로 하여, 어떻게 알림표시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법 제17조의2 제1항). 또, 알림표시를 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규정 또한 없다. 어쩌면 입법자는 처음부터 알림표시를 강제할 의도가 없었고, 알림표시의 취지를 십분 고려한 포털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포털은 입법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언론조정중재규칙에 의거, 기사 제목 바로 밑에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기사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알림표시를 제대로 달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개선을 촉구하고 싶다.

알림표시 시행 초기, 일부 포털들은 기사 제목 바로 밑에 주목도가 높은 방식으로 알림표시를 단 적이 있었다. 그랬던 포털조차 현재는 다른 포털들과 마찬가지로의 방식(본문 하단)으로 달고 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알림표시의 이행방식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알림표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 링크기사와 알림표시

현재 위원회 조정 등의 대상이 되는 포털뉴스 중에는 링크기사의 비율이 상당하다. 여기서 ‘링크기사’라 함은 아웃 링크된 기사, 즉 한 사이트에 노출된 기사 제목 등을 클릭할 경우 다른 사이트(기사제공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서 기사를 읽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링크기사에 대해 포털들은 서버기사⁵⁾와는 달리 알림표시를 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링크기사에 대해서는 알림표시를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희박하다.

5) 링크기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링크기사’ ‘자체기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포털 자체 서버에 해당 기사가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기사 읽기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기사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서버기사’라 하겠다.

오히려, 피해 확산 방지라는 알림표시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링크기사에 대해서도 알림 표시를 달아야 한다. 또, 위원회 규칙에서도 알림표시를 명하고 있다. 언론조정중재규칙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편집 범위를 벗어난 경로로 제공되는 때에는 해당 기사를 선택하면 별도의 화면을 통해 상기 문구가 표시’ 되도록 포털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규칙 제11조 제 3항 단서). 현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포털의 주장에 따라 실무상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링크기사라 할지라도 알림표시를 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분명 알림표시를 달 방법이 있을 것이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링크기사에서의 알림표시 이행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마도 그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와 다른 사이트를 링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사 제목 옆에 곧바로 알림표시를 달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기사 삭제와 알림표시

링크기사라는 것과 더불어 포털이 알림표시를 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기사의 삭제다. 10월 초순부터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포털사건의 알림표시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6건 중 33건에서 알림표시가 달리지 않았고 그 원인은 기사 삭제 및 해당 기사가 링크기사라는 데에 있었다.

(2010. 10. 11. ~ 11. 26.)

포털사건	이 행	불 이 행	
		기사 삭제	링크 기사
56	23	2	31

기사 자체가 삭제되어 없으니 알림표시를 이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 문제된 기사가 아예 삭제된 것이 신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 알림표시가 달린 경우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더 이상 사건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도 한다. 심리가 개시되기도 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포털에 의한 기사 삭제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 신청인, 피

신청인(포털), 조정기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기사 삭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사 삭제에 관한 기사제공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다. 기사공급계약 체결 시 혹은 뉴스 검색 동의서 등에 관련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사 삭제 조치 시에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과연 포털이 어떤 절차를 밟아 기사를 삭제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⁶⁾

Ⅲ. 포털의 심리출석과 관련된 개선방안

1. 포털의 심리출석의무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적절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 당사자는 만나야 하고, 가급적 대면(對面)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회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

이처럼 조정이 성공하기 위한 첫 걸음이 만나는 것이고, 만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출석의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9조 제3항).

사실 심리에의 출석은 의무이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항을 진술함으로써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기회 내지는 권리라고 하겠다. 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이라는 조정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조정에 임할 것인지 여부부터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 강제적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조정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조정은 이념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조정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출석의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6) 2008년 3월 19일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낸 정책제안에 따르면, 당시 포털들은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의 방향을 기사에 대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 허용으로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언론중재법 개정은 임시조치 허용 쪽으로 되지 않았다. 조정신청 이후 기사삭제되는 경우를 더러 보면서 혹시 여전히 임시조치 허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나아가, 이것은 기사가치 훼손을 내세우며 알림표시를 본문 하단에 하고 있는 포털의 태도와 불일치한다. 기사 삭제가 알림표시보다 훨씬 더 기사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에서 출석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하다. 보통 출석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는 ‘구인(拘引)’ 제도가 있다.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인 강제방법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신청인에게는 취하 간주효를, 피신청인에게는 합의 간주효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한다. 이에 관해 위헌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999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입법목적이 있고, 그 입법목적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96헌바19).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한 번은 심리에 불출석할 수 있지만, 불출석 후 심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2. 포털의 심리출석과 관련된 현행 실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주체일 뿐 기사를 생산한 자는 아니다. 비록 언론중재법이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포털에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했을지라도 기사 생산자가 아닌 데서 비롯되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현재 위원회 조정 등 실무는 이러한 포털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1) 상 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포털기사만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피해구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기사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 기사제공언론사와 함께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배 당

기사제공언론사와 더불어 포털사건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심리진행을 위해서는 같은 중재부에서 두 가지 사건을 모두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거,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재부에 사건 한 건씩을 배당하되 피신청인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매개한 사건은 기사제공언론사의 사건을 처리한 중재부에 일괄 배당하고 있다(내규 제3조의2 제3호).

(3) 심리기일 및 시간 지정

포털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은 기사제공언론사와 같은 날짜로 지정하되, 심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사제공언론사와의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사건 심리는 30분 간격을 두고 잡히는데, 다른 위원회 사건들 역시 대체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관해 각 중재부의 특성에 따른 예외(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30분 먼저 시작된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사건이 조정성립 등으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후 진행되는 포털사건 심리 시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보도문 게재 위치, 보도문 크기, 게재 시간 등)이 주로 논의된다.

한편, 하나의 기사가 여러 포털을 통해 제공, 매개된 경우 다수의 포털사건에 대한 심리가 개최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로 동일한 시간에 다수의 포털사건을 병행심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포털사건 심리진행 방식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심리불출석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는 방안

이 방안은 기사제공언론사 사건이 조정성립(정정보도 등)으로 원만히 종결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즉, 기사제공언론사 사건의 합의사항 그대로를 주문으로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사제공언론사 사건이 2차로 연기될 경우 포털 사건 역시 필연적으로 2차로 연기되어야 하며, 2차 심리 시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심리불출석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기사제공언론사 사건이 조정성립으로 끝났을 지라도 포털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실무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포털사들이 직접 출석하여 방어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재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리불출석 방안이다.

– 중재로 전환하는 방안

이 방안은 포털사와 1차 심리 전 조사관이 접촉하여 조건부 중재신청서를 받는 것이다. 부가되는 조건은 기사제공언론사 사건이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종결된 경우에 한하여 중재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된다.

이 방안은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조정에 가담하는 결정을 활용하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중재로 전환하는 것에 포털 측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정정보도 등 청구의 경우에도 중재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없으면 전환하기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심리불출석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 포털사들은 대체로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처리되고 있다. 포털의 출석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0. 5. 1. ~ 7. 31.)

	포털사건 심리개최횟수	포털의 심리출석횟수	출 석 율
정정보도청구	17	4	23.5%
손해배상청구	30	17	56.7%
전 체	47	21	44.7%

3. 포털의 출석의무면제 입법화의 가능성 검토

이와 같은 심리불출석방안을 강구,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리진행에 대한 포털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다. 아마도 불만의 핵심은 위원회 심리진행 방식에 있기보다는 포털에 분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현행 언론중재법의 입법태도에 있다고 여겨진다. 포털은 언론중

재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기사의 유통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사의 유통자일 뿐이므로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는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의 포털과 위원회의 견해의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포털과 위원회 사이의 입장 차가 큰 것은 이 문제가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각설하고, 포털의 출석의무면제가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나아가 바람직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입법적 가능성

포털에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도 잘못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이 가능하려면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할까? 혹시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기로 합의하면 위원회에서 해당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한 모든 포털들에 정정보도를 내도록 결정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실제 비슷한 내용을 담은 2006년경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인터넷 뉴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 위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사의 게시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 또는 ‘삭제’와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기사삭제나 게시중지, 정정보도결정 등은 자칫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성을 떨 수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내린 몇몇 임시조치의 결과가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또, 내용은 기사제공 언론사의 것을 취한다 해도 게재방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따를 것인지 의문이다. 심리불출석방안을 적극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포털들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응하고 있는 현실 또한 이러한 의문을 반영한다. 기존 위원회 조정절차상 다소 번거로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직접 나와 자신의 의사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는 것이다.

(2) 정책적 타당성

현재 포털사건은 언론사 사건에 비해 피해구제되는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합의하면 원 기사가 삭제되지 않은 한 포털에도 어김 없이 보도문이 게재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제3자적 위치에 설 때도 지금과 같을 것인가?

포털기사에 정정보도 등이 실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제공언론사 측의 협조가 절실하고, 다음으로 포털의 의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포털의 의지라 생각한다. 즉, 모든 사안의 사실상 열쇠는 포털이 쥐고 있는 것이다. 포털이 자신에게 부과된 보도의무 이행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사제공언론사를 채근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보도문이 어김없이 게재되고 있다면 지나친 오해일까? 포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포털은 기사제공언론사를 채근할 이유가 사라진다. 또, 기사제공언론사 역시 굳이 포털 측에 정정보도문을 송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수 경험한 바 있는 실제 사례다.

포털에게 부과된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지금 당장은 지나치게 무거운 규제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포털이나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보도문 게재를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분명 존재한다. 포털은 기사의 사실관계를 몰라서 정정보도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책임 하에 기사를 일반에 제공, 매개한 포털이 역시 기사를 생산, 포털에 제공한 언론사와의 공조 하에 풀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포털과 기사제공언론사와 역학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책적으로도 포털에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4. 보론 : 2010서울조정1421 손해청구 사건

최근 위원회에서는 포털에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배상금액은 15만원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포털에 부과된 손해배상이라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대상 기사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보도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 언론사 측에 연락했고, 해당 언론사는 즉시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기사를 내렸다. 하지만 정작 모 포털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기사제공언론사마저 삭제한 기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⁷⁾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사제공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되었다.

위 사안만 보더라도 포털사건이라고 하여 심리 때 게재방식에 대한 합의 빼고는 심리진행할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포털이 심리에 출석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따져야 할 경우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포털에 일률적으로 당사자 지위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출석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석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은 현재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심리불출석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IV.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마지막으로, 포털과 관련한 언론중재법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구글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

구글은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줄곧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거는 이렇다. 구글의 뉴스사이트에 배열되도록 선택되어지는 기사들은 검색로봇이 각 언론사들의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클릭한 뉴스들을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그 클릭의 양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는 것이다.

7) 해당 기사에 대해 포털 측이 삭제 혹은 게시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사제공언론사 측에서는 해당 포털을 포함한 다수의 포털들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 해당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포털들에서는 기사가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포털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들은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포털의 입장에 따르면, 언론사가 늦게 통보한 것인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기사의 배열방식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계편집이나, 아니면 다른 포털들과 같이 경험 있는 편집자가 뉴스를 골라내는 휴먼편집이나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기사의 배열방식은 포털 내부적인 의사에 따라 휴먼편집에서 기계편집으로, 기계편집에서 휴먼편집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혹은 기계와 인간, 두 가지 편집방법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도 있다. 실제 올 6월 구글뉴스는 ‘편집자의 선택’이라는 실험적 시도를 자신의 사이트에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임정욱, ‘알고리즘과 휴먼 편집이 결합한 형태의 저널리즘 선보여’, 신문과 방송, 통권 477호, 64쪽).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정의하며 핵심적인 개념인 ‘제공’과 ‘매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제공’과 ‘매개’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주면 좋겠다.

2. 포털만 알림표시를 해야 하는가?

현재 언론중재법에서는 알림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에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밖의 인터넷매체들, 언론사닷컴이라든가 인터넷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의무를 다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부분 역시 법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

• 조 정

(2010. 5. 1. ~ 7. 31.)

사건번호	청구명	중재부	신청인	피신청인	1차 심리	2차 심리	본 사건 처리결과	포털사건 처리결과
2010서울조정871	정정	1부	(재)광주비엔날레	네이버	×	-	조정성립(정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
2010서울조정872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873	"	"		야후	×	-		"
2010서울조정876	정정	3부	(주)아산 엠단성사	네이트	-	-	조정성립(반론)	취하(중재 전환)
2010서울조정977	"	"		야후	-	-		"
2010서울조정903·904	정정·손배	4부	양재현	네이버	×	○	조정성립(정정)	취하
2010서울조정905·906	"	"		다음	×	○		"
2010서울조정940	정정	6부	국토해양부	네이버	×	-	조정성립(반론)	조정에갈음하는결정(반론)
2010서울조정941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942	"	"		다음	○	-		조정성립(반론)
2010서울조정943	"	"		야후	×	-		조정에갈음하는결정(반론)
2010서울조정944	"	"		파란	×	-		"
2010서울조정977	정정	5부	(주)전국고용 서비스협회	네이버	×	-	조정성립 (기사삭제)	조정에갈음하는결정
2010서울조정978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979	"	"		다음	×	-		"
2010서울조정980	"	"		야후	×	-		"
2010서울조정1013·1014	정정·손배	4부	박창상	네이버	○	-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	취하(보도 약속)
2010서울조정1015·1016	"	"		네이트	×	-		취하
2010서울조정1017·1018	"	"		다음	×	-		취하
2010서울조정1019·1020	"	"		야후	×	-		취하
2010서울조정1021·1022	"	"		파란	×	-		취하
2010서울조정1061·1062	정정·손배	1부	이두형 외 58인	네이버	○	○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	조정성립
2010서울조정1068·1069	정정·손배	3부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	네이버	-	-	중재결정(정정)	취하(중재 전환)
2010서울조정1070·1071	"	3부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1072·1073	"	3부		다음	-	-		"
2010서울조정1074·1075	"	3부		야후	-	-		"
2010서울조정1076·1077	"	3부		파란	-	-		"
2010서울조정1080	정정	2부	(주)잉글리쉬무무	네이버	○	-	조정성립(정정)	조정성립
2010서울조정1081	"	"		네이트	×	-		취하
2010서울조정1082	"	"		다음	○	-		조정성립
2010서울조정1083	"	"		야후	×	-		취하
2010서울조정1084	"	"		파란	○	-		조정성립

사건번호	청구명	중재부	신청인	피신청인	1차 심리	2차 심리	본 사건 처리결과	포털사건 처리결과
2010서울조정1106	손배	5부	박성귀	네이버	○	×	조정불성립	조정불성립
2010서울조정1107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1108	"	"		다음	○	×		"
2010서울조정1109	"	"		파란	-	-		심리 전 취하
2010서울조정1112	"	"	박성환	네이버	○	×	조정불성립	조정불성립
2010서울조정1113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1114	"	"		다음	○	×		"
2010서울조정1115	"	"		파란	-	-		심리 전 취하
2010서울조정1152 · 1153	정정 · 손배	7부	1.최학순 2.조영각	네이버	○	-	조정성립(반론)	취하(기사삭제)
2010서울조정1154 · 1155	"	"		네이트	○	-		"
2010서울조정1156 · 1157	"	"		다음	○	-		"
2010서울조정1158 · 1159	"	"		드림위즈	○	-		"
2010서울조정1160 · 1161	"	"		야후	×	-		"
2010서울조정1162 · 1163	"	"		MSN코리아	○	-		"
2010서울조정1164 · 1165	"	"		파란	○	-		"

• 중 재

사건번호	청구명	중재부	신청인	피신청인	본 사건 처리결과	포털사건 처리결과
2010서울중재41 · 42	정정 · 반론	3부	(주)아산엠단성사	네이트	조정성립(반론)	중재결정(반론)
2010서울중재43 · 44	"	"		야후		"
2010서울중재49 · 50	정정 · 반론	3부	(재)광주비엔날레	네이버	조정성립(정정)	중재결정(정정)
2010서울중재51 · 52	"	"		네이트		"
2010서울중재53 · 54	"	"		다음		"
2010서울중재55 · 56	"	"		야후		"
2010서울중재57 · 58	"	"		파란		"

지정토론문

정 희 성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이 상 협

네이버 정책실 차장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 · 중재 실무개선방안

정 희 성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1. 언론조정 · 중재대상으로서의 인터넷뉴스서비스

포털사이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약간 넘었다. 포털사의 뉴스서비스도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로서 피해구제를 명문화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 청구된 청구건수를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 중재청구가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에 181건(전체 조정청구건수의 11.5%)이던 조정건수가 2010년에는 826건(40.5%)이 접수되었다. 또 중재청구건수는 2009년에 16건(14.4%)이던 것이 2010년에는 54건(70.1%)이 청구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 중재신청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¹⁾

[매체별 조정 · 중재 청구건수]

• 조 정

2010. 11. 19. 현재

	청구건수	신문	주간신문	시사주간지	잡지	방송	케이블 TV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기타
2009	1,573	485 (30.8%)	128 (8.1%)	19 (1.2%)	27 (1.7%)	441 (28.0%)	18 (1.1%)	38 (2.4%)	233 (14.8%)	181 (11.5%)	3 (0.2%)
2010	2041	313 (15.3%)	154 (7.5%)	8 (0.4%)	24(1.2%) (1.2%)	159 (7.8%)	14 (0.7%)	38 (1.9%)	503 (24.6%)	826 (40.5%)	2 (0.1%)

1)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청구된 포털사이트는 14개 정도로 조사된다.

	청구건수	신 문	주간신문	시사주간지	잡 지	방 송	케이블 TV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기 타
2009	111	47 (42.3%)	9 (8.1%)	1 (0.9%)	6 (5.4%)	5 (4.5%)	5 (4.5%)	7 (6.3%)	15 (13.5%)	16 (14.4%)	
2010	77	5 (6.5%)	2 (2.6%)			1 (1.3%)		3 (3.9%)	12 (15.6%)	54 (70.1%)	

두 분의 발제문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는 오프라인 신문이나 다른 매체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를 같이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입장에서라도 공감하는 듯하다.

2. 실무상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

그렇다면 과연 실무상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일선의 포털사들 간에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쟁점이 있는 듯하다. 모든 법률이나 규정이 제·개정 후에는 입법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도출되기 마련이고 개정되고 보완되어 나가야 함은 당연지사다. 건전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하면서 쟁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 포털사의 출석의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서는 양 당사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청구건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나, 대부분의 뉴스기사가 포털사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포털사 입장에서는 매번 심리에 출석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는 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²⁾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을 포털사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과거 포털사와 원기사제공언론사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기사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법으로 규율화했으니 포털사 입장으로서도 계약관계를 달리해도 기사내용의 수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기사의 제목을 포함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됐다.

포털업계의 입장에서도 언론사의 보도 내용 이외에 별도의 사항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당연히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소위 두 가지 유형의 심리불출석방안을 제시하고 실무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포털사의 입장에서는 출석의무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완화내지 경감해 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신문법에서는 기사내용에 대한 수정을 불가능하게 해 놓았을 뿐이고, 기사의 크기나, 활자, 게재 위치등의 게재방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도 앞에서 말한 기사의 게재방법에 대한 신청인 측과 포털사 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³⁾ 피신청인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을 이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 게재해야 할지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피신청인 포털사와의 심리과정에서 기사 내용 및 제목 - 물론 원기사제공언론사의 선행 합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이겠지만 - 만을 협의하지 그 게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는 과거 전통적인 오프라인신문에서 말하는 게재 위치나 크기등의 게재방법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게재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면 출석관련 사항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 한가지는 위원회에서 출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상 행하는 방법들이 신청인 피신청인이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3)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전에 예측가능하다는 문제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조정·중재절차는 양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신청 단계 아니면 그 이전에 피해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결심을 가질 때 앞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는 신청이 있고 난 후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권유하는 식인데, 그런 방법을 법문으로 명문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표시의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목도가 낮은 위치에 표시를 한다거나 표시의무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표시의무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포털사 입장에서야 ‘기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재 심리 중이다’라고 알리는 것이 기존 오프라인 신문과의 형평성 문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기사에 흡집이 될 수도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이런 표시의무의 제대로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언론조정중재규칙에서 표시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위치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양재규 팀장은 피해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포털사업자뿐만 아니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에까지도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표시의무를 적용하는 청구권의 범위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의 경우라 명시하고 있는데 단순한 입법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굳이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다. 전자배열기록 보관의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조정·중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그 보관의무대상사업자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이미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6개월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로 제한하여 군소의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전자배열기록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일일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고지의무 조항이 없어 과연 어떤 인터넷뉴스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업체를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계당국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및 뉴스습득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인터넷 권력의 시대라는 호칭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그 만큼 인터넷, 나아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정보 및 뉴스의 확산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의 광고비 매체비중은 TV, 신문, 인터넷 순이나 2012년에는 인터넷이 신문을 앞지르고, 2020년경에는 TV를 제치고 인터넷이 가장 큰 광고매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⁵⁾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을 수치로서 실감할 수 있는 발표이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매체 영향력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5) 기자회견보 2010. 11. 15. 기사 “인터넷 광고시장이 TV 추월할 것”

결맞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포털사이트는 정보와 기술이 결합된 매체이다. 정보기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술적인 수준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율로써 따라가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언론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그 의무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

▶ 질 의

1. 피해구제 방법에 포털의 특성을 살린 청구권을 신설할 수는 없는지? 현재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사삭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상으로 가능하다면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하면 당사자로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단계에서 미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준적인 형태의 직권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 두고 ‘표준결정문’ 대로 합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제안하셨는데, 혹시 안까지 생각해 두셨다면, 염두에 두고 있는 표준결정문의 형태는 어떤건지 궁금하다.

3. 포털사나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등에서 뉴스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궁금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정보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유통만 할지라도,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 · 중재 실무개선방안

이 상 협

(네이버 정책실 차장)

I. 인터넷뉴스서비스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 방향

네이버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각 포털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뉴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일반 정보와 달리 언론사들이 저작권을 가진 특수한 유형의 콘텐츠로, 정통방법에 의한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법익을 해치는 기사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포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뉴스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각계에 요청해 왔고, 작년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II.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의 현실적 한계

이와 같이, 언론법에서도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신문법 제 10조에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주제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사의 기사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직접 이에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언론법은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진행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도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하거나 또는 2) 언론위 직권조정결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문법과 언론법 간 충돌이 생기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포털은 언론사와 언론위 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하거나 별도 정정기사로 입력한 것을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즉, 포털은 언론사에서 정정한 기사를 다시 ‘유통’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Ⅲ. ‘알림 표시’에 관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실무적 관점

알림 표시 위치는 작년에 포털사-문화부 간 협의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특히 언론법에는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언론사 통지가 있는 경우에 알림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위를 통한 통지의 경우에는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포털사들은 모두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알림표시의 위치가 어디냐의 문제만을 놓고 포털사들이 알림표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실무상에서는 언론사와 계약상 기사제목과 기사 본문 영역을 합쳐서 언론사 관리 영역인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제목과 본문 사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임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언론사의 양해 및 그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정·반론·추후 보도에 대한 표시를 해당 언론사가 직접 반영하여 그대로 전송해 주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사를 수정 전송하면, 포털에는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인 바, 피해자 구제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털마다 뉴스기사 제공 상황이 다르므로 알림 표시는 포털 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Ⅳ. 포털의 심리 출석과 관련된 개선 방안

심리 진행에 있어서 포털은 말 그대로 언중위 조정에 형식적으로 출석을 하고 “양자 간 결정된 사항 대로 포털에 노출한다”는 취지의 합의만을 하고 돌아올 뿐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또는 심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의 관계상 언론사가 기사노출 및 삭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언론사에 특정 기사를 송고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언론사가 결정하여 ‘협조’할 사항에 불과합니다. 즉, 포털이 의지가 있다고 하여 기사가 송고되는 것은 아니며, 포털이 언론사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리 출석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세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심리불출석 방안’은 각 중재부마다 입장이 달라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출석의무 부담의 간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정정보도 등의 사건의 경우 충분히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포털 노출은 언중위에서 언론사 결정문에 “원조정기사가 전송된 포털사에 정정기사 등을 전송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포털사 사건을 진행하고, 포털사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뉴얼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언론사와 신청인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1안 - 취 하

언론사와 신청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언론사의 결정문에 “원조정기사가 전송된 포털사에 정정기사

등을 전송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넣고 포털사 사건은 신청인 동의 하에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포털사에 잔여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안 - 직권 조정

포털사 사건은 지난 1년반 정도의 운영 통해 많은 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언중위에서 직권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드물게 기사 게재 영역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포털사마다 이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세심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2) 해당 언론사와 신청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신청인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포털이 독자적으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와 포털 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신청인 간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포털도 그에 따라 불성립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또한 포털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V. 포털마다 상이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네이버의 경우는 2009년 1월 뉴스캐스트 개편 이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편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제휴 언론사들이 직접 기사를 편집하고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에서 직접 편집, 운영하는 공간으로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지만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기에 플랫폼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뉴스캐스트 기사 제목의 선정성을 지적하면서 포털 사이트 편집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적하며 ‘포털 뉴스 편집 교육 계획’을 밝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기사들이 언론사에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이버에서 편집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좀 더 실제 실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의 의무 등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어언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상으로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털사들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털을 동반자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MEMO

MEMO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법무상담팀 : 02) 397 - 3000, 3010, 3100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국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